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783

발의연월일: 2020. 6. 19.

발 의 자 : 송옥주・유동수・정춘숙

박찬대 • 박용진 • 안호영

박성준•박 정•서삼석

임종성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산재보험제도는 재해자에게 신속한 보상을 통해 생활상의 손실을 최소로 해주는 동시에 재해자의 직업복귀를 아울러 지향하고 있음. 우리나라 재해자의 직장복귀율은 41%대로 독일(74%), 호주(79%), 뉴질랜드(77%), 미국(85%), 캐나다(70%)보다 현저히 낮은 실정임.

독일, 호주, 캐나다, 프랑스 등 산재보험 선진국은 재해자의 직장복 귀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원직복귀의무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미국은 주별로 원직복귀의무제도와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이에 재해자가 원직복귀가 가능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게 해당 노동자의 직장복귀계획서를 수립·제출하도록 하고 근로복지공단은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하며,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복지공단의 직장복귀 계획 수립 명령을 거부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75조의2 및 제129조제1항제3호 신설).

법률 제 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5조의2(사업주의 직장복귀계획서 제출 등) ① 공단은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에 대하여 해당 근로자가 치유된 이후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당시에 재직한 사업으로 복귀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의뢰받은 산재보험 의료기관은 그 근로자의 심리상태, 직업능력 등에 대한 평가와 해당 사업장의 작업환경조사, 사업주 면담 등을 통하여 근로자가 재해가 발생한 당시의 사업으로 복귀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산재보험 의료기관에 평가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③ 공단은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 해당 근로자가 재해가 발생한 당시의 사업으로 복귀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사업주에게 근로자의 직장 복귀에 관한 계획서(이하 "직장복귀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 ④ 공단은 직장복귀계획서의 내용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업주에게 해당 내용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

주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공단은 사업주가 직장복귀계획서를 작성하거나 직장복귀계획서의 내용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9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75조의2제3항 또는 제4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75조의2(사업주의 직장복귀계
	획서 제출 등) ① 공단은 업무
	<u>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에</u>
	대하여 해당 근로자가 치유된
	이후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당
	시에 재직한 사업으로 복귀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산재
	보험 의료기관에 평가를 의뢰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의뢰
	받은 산재보험 의료기관은 그
	근로자의 심리상태, 직업능력
	등에 대한 평가와 해당 사업장
	의 작업환경 조사, 사업주 면담
	등을 통하여 근로자가 재해가
	발생한 당시의 사업으로 복귀
	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여
	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산재
	보험 의료기관에 평가에 필요
	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공단은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 해당 근로자가 재해가 발
	생한 당시의 사업으로 복귀할

제12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제129조(과태료) 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2. (생략) <신 설>

②·③ (생 략)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사업주에게 근로자의 직장 복 귀에 관한 계획서(이하 "직장 복귀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 여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④ 공단은 직장복귀계획서의 내용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업주에게 해당 내용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 다.

⑤ 공단은 사업주가 직장복귀 계획서를 작성하거나 직장복귀 계획서의 내용을 이행할 수 있 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 다.

- 1. 2. (현행과 같음)
- 3. 제75조의2제3항 또는 제4항 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자
- ② · ③ (현행과 같음)